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22 선고 2022가단71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장성환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5. 3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47,241,85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241,857원 및 그 중 9,479,8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일이 2016. 5. 30.일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 또한 2016.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데, 이 사건 소는 2022. 1. 19.에 제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별지